

리스크관리규정

주식회사 실리콘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실리콘투(이하 '회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경과 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다루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
2.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정관 및 내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란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이 회사의 자기자본, 수익, 사업기회, 자금 조달, 조직운영, 평판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말하고,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재무 리스크: 회계처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세금의 신고와 납부, 금리, 유동성, 환율, 신용등급 등 회사의 회계·세무·금융·재무·공시 정책을 포함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무적인 위험을 말한다.

나. 비재무 리스크: 환경, 안전, 보건, 사회공헌, 공급망, 상생협력, 인사, 인재경영, 지배구조,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사업전략·운영, 평판 등과 이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여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재무적인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비재무 리스크는 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여 환경과 사람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또는 회사에 부정적 재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포괄한다.

2.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 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설계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하여 리스크 관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리스크 식별'이란 리스크 유형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4. '리스크 분석'이란 식별된 리스크가 초래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로서, 유형에 따라 심각성, 발생가능성, 잠재적 규모 등의 지표를 적용하여 각 리스크의 영향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대표이사 승인에 의한다.

제2장 리스크 관리 체계

제5조(리스크 관리 기본원칙)

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관리'의 목표는 회사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이다.
2. '리스크 관리'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리스크 관리'는 전사적 차원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 조직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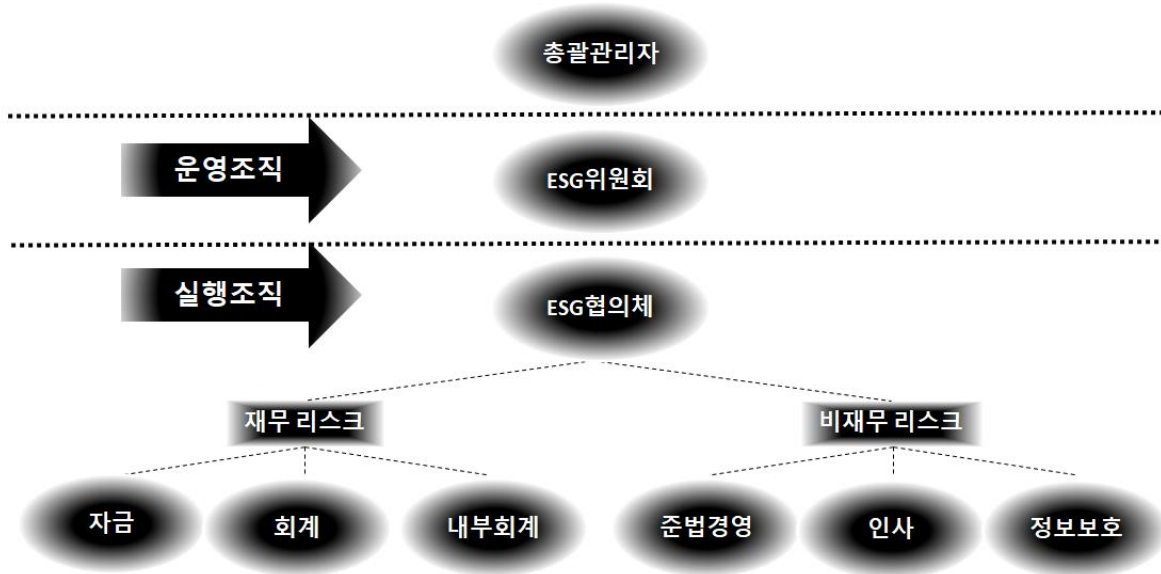
제6조(리스크 관리 조직)

리스크 관리 조직은 '총괄관리자', '운영 조직', '실행 조직'으로 구분하며 각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관리자 : 재무관리이사(CFO)
2. 운영 조직 : ESG위원회
3. 실행 조직 : ESG협의체

[리스크 관리 조직 구성도]

실리콘투 리스크 관리 조직



제7조(리스크 관리 조직의 변경)

'리스크 관리 조직'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기존 '리스크 관리 조직'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직을 이 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조직'으로 본다.

제8조(총괄관리자의 업무)

재무관리이사(CFO)는 '총괄관리자'로서 회사의 리스크에 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관한 식별 및 분석 관련 의사결정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 업무는 총괄관리자가 총괄한다.
2. 총괄관리자는 회사의 '리스크' 중 이사회 및 소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관련 소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관련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운영 조직의 업무)

ESG위원회는 '운영 조직'으로서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에 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스크에 대한 식별 및 평가, 분석 사항 등 보고

2. 리스크에 대한 '총괄관리자'의 지시사항 이행 및 '실행 조직'에 대한 지원
3. 제9조 제2항 소정 주요 사항 중 재무 리스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

제10조(실행 조직의 업무)

ESG협의체는 '실행 조직'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실행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식별 및 평가, 분석 실행
2. 해당 실행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총괄관리자'의 의사결정사항 이행
3. 해당 실행 조직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하여 실무부서 협의 및 의사결정 실행 점검

제3장 리스크 관리 절차

제11조(리스크 식별 및 분석 절차)

회사의 모든 리스크는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영향, 위험 및 기회 분석이 필요한 주제를 식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1. '실행 조직'은 리스크 식별 및 평가 결과를 '운영 조직'에 보고한다.
2. '운영 조직'은 '실행 조직'에서 검토된 리스크에 대해 회사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총괄관리자'에 보고한다.

제12조(의사결정)

'총괄관리자'는 보고된 회사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하여 '재무 리스크' 및 '비재무 리스크'를 조정, 통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승인하여 의사결정한다.

제13조(의사결정의 후속조치)

'운영 조직'과 '실행 조직'은 의사결정에 대하여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다음 의사결정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주기)

'리스크 관리 절차'에 의한 '리스크 식별 및 분석' 및 '의사결정' 등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 매년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2. 수시 : 새로운 법이나 제도의 시행, 신규 사업, 신규 거래처 등 리스크의 식별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6월 01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